

##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화) 제1차 예비·신규 인증 공고

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·시행(’15.6.4.)에 따라 2024년 신규·예비 인증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. 2.

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

- 공고기간 : 2.13.(화)~3.22.(금) (\*일정 변동 될 수 있음, 접수 마감 후 1주간 서면·현장실사 실시)
- 신청대상 : 1) 예비인증 대상 : ①대상주체, ②사업장 입지지역, ③주원료 형태(자가, 계약재배, 지역매입)의 요건을 충족하며, ④사업자등록 및 운영을 하고 있는 경영체 ▶ 4가지 충족하는 경영체  
2) 신규인증 대상 : ①대상주체, ②사업장 입지지역, ③주원료 형태(자가, 계약재배, 지역매입), ④사업성과(2년 경과, 44,438천원 이상인 경영체) ▶ 4가지 충족하는 경영체
- 인증 자격요건

구분	세부내용
대상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상주체 여부</li> <li>-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한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 등</li> </ul>
사업장 입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농촌지역 입지여부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」에 규정된 농촌지역</li> </ul>
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(품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농촌융복합형태 여부(1차×2차), (1차×3차), (1차×2차×3차)</li> <li>■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</li> <li>- 사업계획서(서식) 주생산품 란에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기재, 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(예 : 사과(사과즙, 사과젤리 등))</li> <li>*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 신청</li> <li>■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</li> <li>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자가생산, 계약재배,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(국산)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% 이상으로 하되, 다른 사도와 접해있는 사군의 경우 인접 사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</li> <li>-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, 매매계약서, 거래내역서, 계산서 등 증빙 확인</li> </ul>
사업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고, 평균 매출액이 '최근 5개년 평균 농가 소득 44,438천원' 달성 및 증빙</li> <li>* 산출 근거: ('18) 42,066천원 ('19) 41,182, ('20) 45,029, ('21) 47,759, ('22) 46,153</li> <li>* 창업 3년 미만 경영체는 2개년 평균 농가 소득 적용 가능</li> <li>- (매출액)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 재무제표(손익계산서)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</li> <li>※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</li> <li>- (일자리) 4대보험 신고서류, 일용직 신고서,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</li> <li>- (지역농산물) 자가생산 증명서, 계약재배 협약서,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</li> </ul>
2차·3차산업 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공제품 ▶ (붙임18) 가공제품 현황</li> <li>■ 유통·판매 ▶ (붙임19) 유통·판매 현황</li> <li>■ 체험·서비스 ▶ (붙임20) 체험·서비스 현황</li> </ul>

□ 인증 신청서류 ([www.제주6차산업.com](http://www.제주6차산업.com)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)

- ▶ 인증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 증명서(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),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의 경우), 사업자 등록증, 국가에서 공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일자리 증빙서류, 지역농산물 증빙서류 등

□ 인증신청 접수 :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직접제출

- 접수방법 : 직접 제출 ⇒ 제주시 첨단로 213-65,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(T.064-722-7917)  
\*서류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오니 방문접수 전, 반드시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
- 접수기한 : 2024.3.22.(금) 18:00 도착에 한함
- 접수비 : 200,000원(입금증 증빙서류 첨부 필수)  
단, 신규신청에 한함. (예비 인증 신청의 경우, 접수비 없음)

□ 공고 관련 추진절차

진행	①예비·신규 인증 안내	②컨설팅지원	③인증 접수	④서면·현장실사	④적격심사 및 인증 공고
일정	2.13.(화)~3.22.(금)	2월~3월	3.22.(금) 마감	4.1.(월)~4.5.(금)	5월
내용	예비신규 절차접수심사 기준 등 안내	▶ 예비신규 인증 관련 컨설팅 컨설팅 2회 무료	▶ 인증 심사비 *자부담입금	▶ 접수 경영체 대상 서면·현장실사	▶ 70점 이상 경영체 적격심사 및 최종 인증 공고

- \*인증설명회는 집합설명회 또는 현장방문 설명회로 개최 예정([www.제주6차산업.com](http://www.제주6차산업.com) 공지사항 참조)
- \*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 등 변경될 수 있음

□ 비고

- 당해연도 기간 만료 대상 업체는 당해연도 예비·신규에 접수불가
- 차년도 신청시, (예비)인증기간 만료 기준 1년(차년도 공고 시작일 기준) 후 신청 가능  
ex) (예비)인증기간 2023년 6월 1일 만료시, 2024년 6월2일 이후의 공고에 접수 가능

□ 문의처 :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

전화 : 064-722-7917 / 이메일 : [stormand@jeju6th.kr](mailto:stormand@jeju6th.kr) / Fax 064-722-7919